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07호 2011. 1. 1.(토)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4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56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5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1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58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88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5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4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1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07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0-76호(2011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27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0-847호(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129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그에 따른 업무 변경 내용의 분장사무 반영 ○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부서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신설(2) : 전략사업추진단, 가정복지과 ○ 기구 명칭 변경(3) : 자치행정과 → 총무과, 재무과 → 재무회계과, 도시경관과 → 도시계획과 ○ 사무분장표 [별표1, 별표2, 별표3] 일부내용 수정(제4조 내지 6조 관련) ○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4] 수정(제7조 관련) ○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5] 수정(제10조 관련) ○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부칙에 명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4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실·과장**” 을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실·과장**” 을 “**부서장**” 으로, “**실·과의**” 를 “**부서의**”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실·국의**” 를 “**국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를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경관과” 를 “도시계획과”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 를 “재무회계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재무과장” 을 “재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가정복지과장” 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 을 “공원녹지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 (제4조 관련)

국명	분장사무
자치행정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6. 직장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13.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8.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무선인터넷 기반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5.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6.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0.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31.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3.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4.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5.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6.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8.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0.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1.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44. 그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0.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2.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묘지(매장, 개장, 유실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5. 여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보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0.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2.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3.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에 관한 사항 26. 농·축·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27.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28.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29.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30. 폐기물에 관한 사항 31.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2.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3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40.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41.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 시 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15.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0.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1.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2.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3.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6. 재난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8. 기타 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별표4】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3	연수구 일원

【별표5】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연수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64	연수구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u>실·과장</u>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구 본청의 국장, <u>실·과장</u>,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u>실·과의</u>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국장 및 <u>부서장</u>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u>부서장</u>, ----- ----- <u>부서의</u> -----.</p>
<p>제3조(<u>실·국의</u>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u>을 둔다.</p>	<p>제3조(<u>국 등의</u> 설치) ----- -----<u>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u>-----.</p>
<p>제4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u>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u>를 둔다. ②·③ (생략)</p>	<p>제4조(자치행정국) ① ----- <u>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u>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u>,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를 둔다. ②·③ (생략)</p>	<p>제5조(주민생활지원국) ① ----- ----- <u>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u>, -----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도시국) ①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u>도시경관과</u>,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③ (생략)</p>	<p>제6조(도시국) ① ----- <u>도시계획과</u>, ----- -----. ②·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조직문화 구상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채정 기준을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 신규사무 발생 등에 따른 부서 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급별[별표2] 정원채정기준 조정 (제3조 관련) ○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3] 조정 (제4조 관련) ○ “조례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부칙에 명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5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2% 이내	28% 이내	8%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 율	7% 이내	31% 이내	52% 이내	10%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총 계	59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28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2	3	5	1	11
6급 이하	481					
기능직 계	68					
6급이하	68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신설, 명칭변경 및 이관에 따른 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2) : 전략사업추진단, 가정복지과 - 명칭 변경(3) : 자치행정과 → 총무과, 재무과 → 재무회계과, 도시경관과 → 도시계획과 ○ [별표5]의 제목 수정(안 제14조) ○ 다른 규칙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부칙에 명시 ○ 사무분장표 [별표1, 2, 3, 4] 일부내용 수정(안 제9, 11, 13, 15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실장·과장의”을 “국장 및 부서장의”로 하고, “실·과”를 “부서”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 교육홍보과장, 재무과장”을 “총무과장, 교육홍보과장,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를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건설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도시경관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중 “실·과의”를 “부서의”로, 같은 조 본문 중 “실·과의”를 “부서의”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건강증진과장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을 “분임경리관 - 재무회계과장”

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6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금권등의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 -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 를 “재무
회계과” 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가정복지과장” 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p>전략사업 추진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전략 개발 및 읍부즈만 제도 운영 2. 정책 및 비전 개발에 따른 민간교류 및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복합시설 건립 공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6. 읍부즈만(행정 고충처리 등) 사업추진 체계 확립·추진 7. 원스톱서비스 업무체계 수립·추진 지원 8. 연수의제 21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 3. 사무위임, 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사절단 파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지방제도개선 및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 20.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행정연구과제의 종합분석 및 연구보고에 관한 사항 22. 구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23. 국정시책 연계 군구평가 총괄관리 24.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 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평가 25. 예산개요(순계 등) 작성에 관한 사항 26. 사업예산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27. 예산의 조정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8.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 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30. 성립전 예산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1.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2.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33.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4.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35. 교부세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6. 교부금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7. 국고 및 시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8.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40. 지방재정 운영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 41.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42.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44.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5.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6.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47.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8. POOL 경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9.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0.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재정관리시스템 권한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 5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3.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재정고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5.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57.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8.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사항 59.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60.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6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6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6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6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간행에 관한 사항 6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6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9.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0.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7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7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7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7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7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8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1. 회계에 관한 실지 검사에 관한 사항 82. 클린신고센터 운영 83.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8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5.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7.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8.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89. 주전산기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90. 구내 유·무선 정보통신망(LAN, WAN구간)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1. 네트워크장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2. 내·외부망 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3.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94.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95.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6.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구본청 북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상용직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2.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23.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4.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5.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p>27.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p> <p>28.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p> <p>29. 공무원증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p> <p>30.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p> <p>31.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p> <p>32.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p> <p>33.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p> <p>34.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p> <p>3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p> <p>3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p> <p>37.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38.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p> <p>39.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40.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p> <p>41.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p> <p>42.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p> <p>43.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p> <p>44.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p> <p>45. 여론 및 동향과약에 관한 사항</p> <p>46. 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47.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p> <p>48.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p> <p>49.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p> <p>5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5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3.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54. 행정구역의 위치·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55. 동 주민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6.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7. 통·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58.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59.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0.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1.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2.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3. 행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4.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65.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66.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7. 기타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홍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1.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3.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24.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25.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6.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27.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28.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29.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30.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32.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33.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4.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VTR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35.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36.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38. 무선 인터넷 기반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39. 행정정보통신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0. CCTV, 인터넷 방송, 콜센터, IPT, ARS, Wi-Fi 구축 41. 통신·방송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행정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행정정보통신(구내통합배선, 행정전화망, 팩스민원망, 무선망, 방송망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45. 교환실, 팩스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6. 전자 홍보전광판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48.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9. 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0. 정보통신기술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1.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에 한함)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무회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동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0. 구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2.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 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6.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17.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0.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영선관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에 관한 사항 21.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23.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신축·증축·개축·보수 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24. 구 청사·동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25. 대강당·대회의실·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6. 사무실 배치·조정 에 관한 사항 27.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9.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8.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23.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6.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27. 토지 잠정등급 발급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등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3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3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3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6.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 24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19.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20.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21.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2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3.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 개발부담금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27.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29.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0.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32.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5. KLIS시스템 토지이동정리 36.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37.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3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40. 지적측량 기준점(도근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1.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4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4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항 44.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4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46.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47.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48.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 49.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50.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1.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52.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 가격적정서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 54.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55.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56.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7.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 5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59.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60.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6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3.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64.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5.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66.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67.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68.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69.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70.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71.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72. 지적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아주기) 73.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4.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총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 관리 전반 사항 20.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22.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3.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7. 차상위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29.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1.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3.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36.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37.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8.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9.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40.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1.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42.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8.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현황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5.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9.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25.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6.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급여지급 사항 27.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 5.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7. 노인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인의 날 및 경로미팅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4.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경로효친사상 양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8.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장사 등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2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24.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26.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7. 여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사항 29. 모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1.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4.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5.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7. 시소와그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41.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42.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43.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44.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5.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6.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금요예술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송죽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9. 연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0. 문화공원의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사항 1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편의시설업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관광숙박업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5.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6. 종합휴양업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7.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8.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 관광편의시설업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관광숙박업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2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3. 종합휴양업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24.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6. 문고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28.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29.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용담공원 내 축구장, 씨름장 및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32. 공원내 체육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운영, 사용, 이용) 33.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에 대한 사항 34.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6.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8.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39.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0.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1.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3.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7.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4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49. 기타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0.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1.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5.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8.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2.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5. 농지개량 및 간척사업에 관한 사항 16. 분배농지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도 증산사업에 관한 사항 18. 양정에 관한 사항 19.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20.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1.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5.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8.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30.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34.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35.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7.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8.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9.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40.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41.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42.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3.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4.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5.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7.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8.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9.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0.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51.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52.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53.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4.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5.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6.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7.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58.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9.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60.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1.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62.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3.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4.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5.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6.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7.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8.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0.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1.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72.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4.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5.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76.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7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78.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79. 연료수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80.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1.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8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3.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4.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5.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6.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7.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8.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89.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90.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91.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92.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93.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4. 공업 발전법에 관한 사항 95.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6. 불량, 불법 공산품 추방운동에 관한 사항 97. 지역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8.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99.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0.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01.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0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3. 기타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04.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p>105.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106.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p> <p>107. 액화석유가스(판매)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p> <p>10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p> <p>109.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승인에 관한 사항</p> <p>110.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p> <p>111.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13.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p> <p>114.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에 관한 사항</p> <p>115.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p> <p>1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p> <p>11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p> <p>118. 공산품 원산지표시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p> <p>119.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p> <p>120. 승강기에 관한 사항</p> <p>121. 고압가스 사업장소의 개시(재개), 휴지, 폐지에 관한 사항</p> <p>12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개시(개폐), 휴·폐지에 관한 사항</p> <p>12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p> <p>124. 특정고압가스,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p> <p>12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p> <p>127.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p> <p>128.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129.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p> <p>130. 담배 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131. 담배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32.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133. 구인 구직신청에 관한 사항 134.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35.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136.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7.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138.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9.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40. 직업안내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41.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2.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4.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5. 공공근로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6.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7.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8.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9. 공공근로자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50. 공공근로자 교육 및 포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1.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52. 공공근로사업장 사고처리 및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153.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반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적환장 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 11.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 15.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1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타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2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28.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9. 재활용센터 관리 31.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3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33.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4.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1.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2.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3.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5.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0. 저탄소 녹색통장(탄소포인트)갓기 추진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 3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 33.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 3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5.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본격추진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7.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9.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0.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41.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2.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3.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44.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5.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4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47. 유해화학물질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9.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2.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53.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4.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55.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56.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7.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8. 대기, 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59. 민간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60.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1.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2. 폐석면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3.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4.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6.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8.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0.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71.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관련업(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11. 식품접객업(유흥, 단란, 일반음식점등)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식품운반업 포함)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3.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4.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7.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18.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19.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0.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 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1.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3.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공중·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p>28.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29. 공중위생업소 등급선정에 관한 사항</p> <p>3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1. 공중·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p> <p>32.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p> <p>33. 공중·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삭제)</p> <p>34.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35.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36.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p> <p>37.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8.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p> <p>39.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0.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p> <p>44.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p> <p>45.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p> <p>46.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p> <p>47.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및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p> <p>48.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p> <p>49.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p> <p>50.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p> <p>51.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p> <p>5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 설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3. 지하도겸 상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6.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7.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20.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 설 과</p>	<p>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p> <p>3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p> <p>32.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p> <p>33.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4.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5.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p> <p>36.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p> <p>37.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p> <p>38.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p> <p>39.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p> <p>40.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p> <p>41.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2.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p> <p>43.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p> <p>44. 아암도 해안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5.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46.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7.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8.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p> <p>49. 전기공사사업법에 관한 사항</p> <p>50.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51. 도시국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 축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용도변경 제외) 7. 향측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7. 옹벽 및 공작물 축조허가에 관한 사항 18.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사항 20.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7.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사항 29.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0.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2.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도시계획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8.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포함) 20.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환지 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5.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미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구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단,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단,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 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 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사항 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p>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p> <p>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p> <p>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등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p> <p>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p> <p>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p> <p>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p> <p>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p> <p>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p> <p>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p> <p>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p> <p>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p> <p>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p> <p>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압류등록 및 압류말소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9.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3.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4.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시설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6.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20.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3. 차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5.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2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7.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8.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9.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3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압류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36.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37.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 검사명령에 관한 사항 40. 이륜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41. 이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 책임보험 등에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 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 등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4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45.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7.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등록 원부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50. 신규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항 51.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52.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 53.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54.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5.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7.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58. GreenParking사업에 관한 사항 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 60.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62. 자동차 신규등록 63. 자동차 등록증의 교부 64. 자동차 경정등록 65.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말소등록 66. 무단방치차량 처리 67.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난안전 관 리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과약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2.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난안전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안전점검의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0.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1. 기타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2.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3.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7.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39.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0.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1.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44.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5.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대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47.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8.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49.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 2】

직속기관(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임계약직 고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북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12.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14. 보건소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무기직 및 기간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6. 전임계약직 및 무기직, 기간제 보수에 관한 사항 17. 회계관계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9. 차량 및 전산 관리 20.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1. 보건사업 통합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각종문서 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3.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4. 일반진료(양한방, 방사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5. 진료비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6.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에 관한 사항 27.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골다공증, X-Ray 등) 28.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29. 휠체어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1. 약사법에 의한 개설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4.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6.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명절연휴 진료대책에 관한 사항 4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1.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2.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43.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6.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7. 전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48. 레지오넬라 관리에 관한 사항 4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대책 수립 50. 에이즈 등 성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해외유입전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52.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54. 방역 소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55.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56. 검사에 관한 사항(전염병 및 각종 건강진단 등) 57.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58. 항산화 검사 등에 관한 사항 59.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일상경비 지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증진서비스분야 ISO9001인증에 관한 사항 11. 건강관리터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3.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체력측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18. 금연법령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금연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0.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2.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 알코올 사회복귀이용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4. 알코올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0. 치매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2. 치매조기검진관리에 관한 사항 3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관한 사항 34. 임신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5. 난임부부 관리에 관한 사항 3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37. 임신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38.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39.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40.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2.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3.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사항 44.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46.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7.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48.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9.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사항 50.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1.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52.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53.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54.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상설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6. 방문보건대상자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57.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58.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5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판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60.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61.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4.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5.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6.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68. 청소년 일본뇌염 및 DT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9.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70.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71.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72.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73. B형간염 수직감염에 관한 사항 74.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

【별표 3】

사업소 사무분장표 (제13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어린이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운영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도서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7. 기증자료 및 위탁도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장서통계·관리 및 정기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수리 및 제본에 관한 사항 10. 도서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1. 서고 및 장서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대출을 위한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3. 반납독촉장 발급에 관한 사항 14. 열람실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등록도서 인수에 관한 사항 16. 자료 분류 및 편목에 관한 사항 17. 도서배가 및 서가정리에 관한 사항 18. 도서제작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도서제작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0. 신간도서 홍보에 관한 사항 21. 교육프로그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문화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전산서버 등 전산장비 및 전산보안에 관한사항 24. 도서관 홈페이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별표 4】

하부기관(동 주민센터) 사무분장표 (제15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동 주민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 및 당직에 관한 사항 5. 통·반 구역확정 및 통·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신고 사실 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2. 동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시 및 동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에 관한 사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복지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관한 사항 19.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관한 사항 20.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별표 5】

동장 직렬 및 직명 (제14조 관련)

직 명	직 렬
옥련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련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선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연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연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연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청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동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 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본청의 <u>국장·실장·과장</u>의 직급, 소속기관의 <u>장</u> 및 하부행정기관의 <u>장</u>의 직급과 <u>실·과</u>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구 본 청</u></p> <p><신 설></p> <p><u>제3조(생 략)</u></p> <p><u>제4조(자치행정국)</u>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자치행정과장, 교육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민원지적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 ----- <u>국장 및 부서장의</u> -----, ----- <u>부서</u>-----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구분청</u></p> <p><u>제3조(전략사업추진단)</u> 전략사업추진단장은 <u>지방행정사무관</u>으로 보한다.</p> <p><u>제4조(현행 제3조와 같음)</u></p> <p><u>제5조(자치행정국)</u> ----- -----, <u>총무과장, 교육홍보과장, 재무회계과장,</u>----- -----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u>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청소행정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u>환경보전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 ----- ----- -----, <u>주민생활지원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u>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u> ----- -----, <u>청소행정과장,</u> ----- -----, -----.</p>
<p>제6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건설과장은</u>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도시경관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7조(도시국) ----- -----, <u>건설과장,</u> ----- ----- <u>도시계획과장은</u> ----- ----- ----- ----- ----- -----.</p>
<p>제7조(실·과의 분장사무)구 본청에 두는 <u>실·과의</u>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p>	<p>제8조(부서의 분장사무) ----- ----- <u>부서의</u> ----- -----.</p>

현행	개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직속기관</u></p> <p><u>제8조</u>(소장·과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u>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u></p> <p><u>제9조</u> (생략)</p> <p><u>제10조</u> (생략)</p> <p><u>제11조</u> (생략)</p> <p><u>제12조</u> (생략)</p> <p><u>제13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직속기관</u></p> <p><u>제9조</u>(소장·과장의 직급) ----- ----- ----- --, <u>건강증진과장은</u> ----- ----- ----- -----.</p> <p><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p><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p> <p><u>제14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5조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3조 제1항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중 “보좌보조기관” 을 “보조보좌기관” 으로 한다.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분청 : 414명 → 423명 (증 9명) - 어린이도서관 : 6명 → 5명 (감 1명) - 동 : 119명 → 111명 (감 8명) ○ “규칙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의 내용을 부칙에 명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좌·보조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합계	597	423	18	40	5	111
정무직	1	1				
일반직	528	375	12	36	5	100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2	22	3	5	1	11
행정	22	11	3			8
의무	3			3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4	3				1
행정·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1			1		
6급	121	93	4	8		16
행정	61	44	4			13
세무	4	4				
사회복지	2	2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2	2				
보건	3	3				
간호	1			1		
환경	1	1				
시설	11	1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8	5				3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3	3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3	3				
행정·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168	123	5	13	1	26
행정	74	46	5		1	22
세무	19	19				
사회복지	14	10				4
전산	4	4				
사서	1	1				
공업	7	7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7	1		6		
환경	6	6				
시설	19	19				
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47	113		9	2	23
행정	60	44		1		15
세무	11	11				
사회복지	7	3				4
전산	6	6				
사서	1				1	
공업	8	7			1	
녹지	3	3				
보건	7	3		4		
의료기술	3			3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19	19				
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9	5				4
행정·농업	1	1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2	2				
9급	45	20			1	24
행정	23	5				18
세무	2	2				
사회복지	1	0				1
전산	1	0			1	
공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8	3				5
행정·환경	0	0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0	0				
기능직	68	47	6	4		11
6급	4	4				
운전	1	1				
조무	1	1				
기계	1	1				
조무사무	1	1				
7급	21	16	2			3
기계	3	3				
운전	4	3	1			
사무	3	2	1			
조무	10	7				3
전기	1	1				
8급	35	23	4			8
운전	6	6				
사무	7	4	2			1
조무	20	11	2			7
전화상담	1	1				
방호	1	1				
9급	5	3	0	2		0
전화상담	0	0				
운전	5	3		2		
사무	0	0	0			0
조무	0	0	0			0
방호	0	0				
10급	3	1		2		
운전	2	0		2		
조무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u>보좌·보조기관</u>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정원의 배정)----- <u>보 조 · 보 좌 기 관</u> ----- ----- ----- ----- ----- -----</p>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심사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 발주예정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심사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심사요청과 심사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가 있을시 재심사 요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심사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구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
 -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주민센터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사업) ①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타공사
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업
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검토를 받은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1,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체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p>◦ 첨부 서류</p>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1,2의 전산파일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p>◦ 기획편집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1,2의 전산파일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p>◦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 style="margin-left: 20px;">-</p>			
<p>◦ 첨부 서류</p> <p style="margin-left: 20px;">1. 설계변경 사유서</p> <p style="margin-left: 20px;">2.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도서 각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과업지시서)</p> <p style="margin-left: 20px;">3. 3의 전산파일</p> <p style="margin-left: 20px;">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주요심사내용

■ 공 사(용역·물품) 명 :

□ 사업개요

-
-
-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계약심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 건 명 :

순번	심사결과(조정사항)	조치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고
			당초	조정	증감	

※ 증감액 산정 시 공사비는 원가계산을 반영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재심사(공사·용역·물품·설계변경) 사유서

구 분	항 목	재심사 사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계약심사대장

연번	접수 일자	발주 부서	문서 번호	건 명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 금액	처리 일자	처리 구분	사유	처리자	처리 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금 대출금리 하향조정 ○ 투명한 행정절차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변경(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3%』 ⇒ 『2%』 ○ 용자대상 선정 우선순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삭제 (안 제4조2항) ○ 용자절차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삭제(안 제5조1항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3%를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용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생략)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용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5조(용자절차)①(생략)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제5조(용자절차)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7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생략)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로 하며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구 금고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p>	<p>제7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 ----- ----- ----- ③~⑥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 정일부개정규정</p>	<p><input type="checkbox"/>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조직문화 구상과 신규사무 발생 등에 따른 부서 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정원 관련 규정을 정비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중 “실·과” 를 삭제, 제2조 중 “실·과·별” 을 삭제 ○ 구분청 부서별 정원 조정 (안 별표 1)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2) ○ 직속기관(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4)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5) ○ “규정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의 내용을 부칙에 명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 214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분청 실·과,”를 “구분청,”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실·과별 정원은”을 “정원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23	
전략사업 추진단	일반직	계	7	
		소 계	6	
		5 급	1	행정1
		6 급	2	행정1, 시설1
		7 급	3	행정1, 시설2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조무1
기획감사실	일반직	계	26	
		소 계	26	
		5 급	1	행정1
		6 급	9	행정7, 전산1, 행정·사회복지1
		7 급	11	행정7, 시설1, 전산3
		8 급	5	행정3, 전산2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총무과		계	28	
	구청장		1	정무직1
	일반직	소 계	22	
		3 급	1	행정1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8	행정8 (전임계약직 1 포함)
		8 급	5	행정4, 전산1
		9 급		
	기능직	소 계	5	
		7 급	2	사무1, 조무1
		8 급	3	사무1, 운전2
		9 급		
교육홍보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1	
		5 급	2	행정2
		6 급	6	행정4, 행정·전산1, 행정·통신1
		7 급	6	행정4, 전산1, 통신1
		8 급	7	행정4 (전임계약직 1 포함), 전산1, 통신2
		9 급		
	기능직	소 계	4	
		7 급	1	조무1
		8 급	3	사무1, 전화상담1, 조무1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재무회계과		계	20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시설·공업1
		7 급	6	행정3, 공업1, 시설2
		8 급	4	행정2, 공업1, 전산1
		9 급		
	기능직	소 계	5	
		6 급	1	운전1
		7 급	2	조무1, 운전1
		8 급	2	운전2
		9 급		
세 무 과		계	41	
	일반직	소 계	39	
		5 급	1	행정1
		6 급	7	세무4, 행정·세무3
		7 급	17	세무17
		8 급	12	세무10, 행정1, 전산1
		9 급	2	세무2
	기능직	소 계	2	
		8 급	2	사무2
		9 급		
민원지적과		계	30	
	일반직	소 계	2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 급	8	행정4, 시설4
		8 급	11	행정6, 시설5
		9 급	2	행정1, 행정·시설1
	기능직	소 계	2	
		7 급	1	조무1
		8 급	1	운전1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주민생활 지원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 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 급		
	기능직	소 계	2	
		7 급	2	조무1, 운전1
사회복지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1, 사회복지4, 간호1
		8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 급	2	행정·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6 급	1	조무·사무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가정복지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1, 사회복지3, 시설1
		8 급	4	행정·사회복지3, 보건1
		9 급	1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조무1
문화체육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시설1
		7 급	6	행정4, 시설1, 사서1
		8 급	3	행정3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2	
		7 급	2	사무1, 운전1
8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별
지역경제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공업1, 행정·공업1
		7 급	4	행정2, 공업2
		8 급	5	행정2, 공업2, 행정·농업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조무1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환경1
		6 급	3	행정2, 행정·환경1
		7 급	5	행정2, 환경2, 행정·환경1
		8 급	3	행정2, 환경1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6 급		1	조무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환경보건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환경1
		6 급	4	환경1, 행정·환경3
		7 급	5	환경3, 세무1, 행정·환경1
		8 급	5	행정1, 환경2, 행정·환경2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조무1
위생관리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보건3, 행정·보건1
		7 급	3	보건3
		8 급	5	보건2, 행정·보건1, 보건·식품위생2
		9 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30	
	일반직	소 계	22	
		4 급	1	기술1
		5 급	1	시설1
		6 급	5	행정2, 시설2, 시설·공업1
		7 급	5	행정1, 시설2, 공업2
		8 급	8	행정1, 시설5, 세무1, 공업1
		9 급	2	행정1, 시설1
		기능직	소 계	8
	6 급		1	기계1
	7 급		3	기계2, 전기1
	8 급		2	조무1, 방호1
	9 급		2	운전2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별
건 축 과	일반직	계	18	
		소 계	15	
		5 급	1	시설1
		6 급	4	행정1, 시설3
		7 급	3	시설3
		8 급	5	시설5
		9 급	2	시설2
	기능직	소 계	3	
		7 급	1	기계1
		8 급	2	조무2
도시계획과	일반직	계	14	
		소 계	13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행정1, 시설2
		7 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8 급	4	행정1, 시설3
	9 급	1	시설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조무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공원녹지과	일반직	계	17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녹지1
		6 급	3	녹지2, 시설·녹지1
		7 급	4	녹지3, 공업1
		8 급	7	행정2, 녹지3, 시설·녹지1, 공업1
		9 급	1	녹지1
	기능직	소 계	1	
		9 급	1	운전1
교통행정과	일반직	계	28	
		소 계	22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행정·공업1, 시설1
		7 급	5	행정4, 세무1
		8 급	10	행정9, 시설1
		9 급	1	공업1
	기능직	소 계	6	
		7 급	2	조무2
		8 급	3	운전1, 조무2
		9 급		
		10급	1	조무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별
재난안전 관리과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행정·공업1, 시설1, 행정·시설1
		7 급	4	행정2, 시설1, 행정·전산1
		8 급	3	행정1, 공업2
		9 급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계	18	
	일반직	소계	12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5
	기능직	소계	6	
		7 급	2	사무1, 운전1
		8 급	4	사무2, 조무2
		9 급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보 건 소	합 계		40	
보건행정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1	
		4 급	1	기술1
		5 급	4	의무3, 행정·보건1
		6 급	4	행정·보건1,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 급	7	보건2,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1
		8 급	5	행정1, 보건1, 의료기술3
	기능직	소 계	3	
		9 급	1	운전1
10급		2	운전2	
건강증진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 급	4	간호1,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7 급	6	간호5, 보건1
		8 급	4	보건3, 간호1
	기능직	소 계	1	
		9 급	1	운전1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어 린 이 도 서 관	계		5	
	일반직	소계	5	
		5급	1	행정·사서1
		7급	1	행정1
		8급	2	사서1, 공업1
		9급	1	전산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합계			111		
옥련1동	계		9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옥련2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1		
선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환경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연수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1
연수2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1
연수3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청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동춘1동	계		8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동춘2동	계		8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송도동	계		12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조무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u>구본청 실·과</u>,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구본청</u>, ----- ----- ----- ----- ----- --.</p>
<p>제2조(직급별 정원) ①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u>실·과별 정원은</u>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직급별 정원) ①----- ----- <u>정원은</u> ----- -----.</p>

2011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 구분지상권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I. 2011년도 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 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① 용어 정의
- ② 적용 범위
- ③ 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
- ④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산식
- ⑤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2. 세부결정사항

연수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30,796 종, 0.01% 인상)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0,156 종, -0.04 % 인하)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9 종, 6.25 %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20 종, 0.3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612 종, 2.64 %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401 종, -0.30 % 인하)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21 종, 0.21 %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75 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종)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2,471 종)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연수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0 - 847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연수구 연수동 60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명칭】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 2,456.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원인재로 115호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09. 09. 22. ~ 2010. 12. 27.